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11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임광현·박홍배·박해철

이기헌 • 이건태 • 김정호

민홍철 · 정진욱 · 박민규

신영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 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 4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 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 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정장 구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복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피복 구입비가 연 5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복구입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복 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정장 구입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피복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
	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피복
	구입비가 연 5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⑦</u> <u>제5항</u>
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u>⑦</u> ・ <u>⑧</u> (생 략)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	<u>10</u>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	ኔ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
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 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2. (생략)
- ① 제1항부터 <u>제9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① (생략)

<u>.</u>
1
- <u>제7항</u>
2. (현행과 같음)
<u> </u>
① (현행 제11항과 같음)